

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(제3조의4 관련)

구분	방제사업의 규모	배치기준
책임 기술자	100만제곱미터 이하	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
	200만제곱미터 이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.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.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
	300만제곱미터 이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.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.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
	300만제곱미터 초과	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
감리원	100만제곱미터 이하	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
	200만제곱미터 이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.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.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
	300만제곱미터 이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.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.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
	300만제곱미터 초과	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

※ 비고 : "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"이란 2010년 3월 10일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·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.

